



●발행●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273-9535

●편집●
 한국여성의전화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269-2962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평화로운 가정, 폭력 없는 사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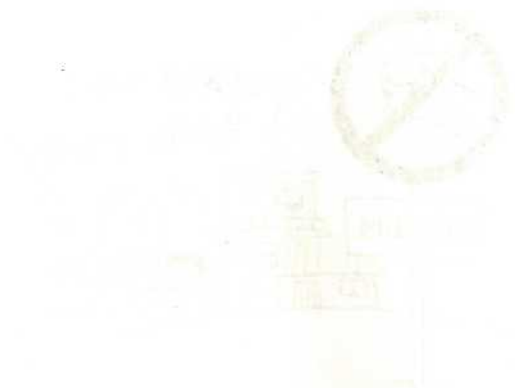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Mc.c.8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평화로운 가정, 폭력 없는 사회를’**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C O N T E N T S

목 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가정폭력어란



1. 가정폭력의 실태 8



2. 가정폭력의 피해와 후유증 11



3. 가정폭력의 폐해 15



4. 가정폭력의 특성 16



5. 가정폭력의 원인 19



6.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21

7. 현행법의 문제 26

8.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 27

부록 29

1. 가정폭력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2. 상담기관 안내 31





자료집을 발간하며

가정은 우리사회의 기초 단위로 가정의 건강성은 바로 사회의 건강성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벽이 너무 높아 누구도 가정폭력의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계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다가 결국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일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은폐성과 반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생자들은 계속되는 폭력상황을 극복할 힘을 점점 더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국가와 사회가 개입하여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폭력의 추방으로 부터 또 다른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법의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족해체의 주범이며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비행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인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는 반 인간적, 반 인륜적, 반 사회적인 가정폭력을 근절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일반인들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입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폭력없는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에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바랍니다.

1996. 10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혜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평화로운 가정, 폭력없는 사회를’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등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그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1. 가정폭력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가정폭력은 숨겨진 범죄로 그 실태가 외부에 노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와 연구자료만으로도 가정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1) 아내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 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매맞는 아내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한국여성의전화 연구(1983)에서 조사대상의 42.2%가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1992)의 경우는 여성응답자(640명)의 45.8%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93, 94년도 면접 내담자의 통계에서 구타 방법으로 목조르기를 포함해 마구 두들겨 팬다가 37.48%,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가 10.61%, 담배불로 지진다를 포함해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리는 경우도 15.98%를 차지해 아내에 대한 폭력이 <표1>과 같이 매우 잔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1 ▶ 구타 방법 (가장 구타가 심했던 경우)

방 법	발생율 (%)
물건을 던진다.	5.52
머밀거나 머리카락, 팔을 쥐고 흔든다.	5.66
뺨을 때린다.	5.37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5.23
물건으로 때리거나 때린다고 협박한다.	5.80
마구 두들겨 팬다. (목조르기 포함)	37.48
옷을 벗기고 때린다. (가두어 놓기 포함)	7.0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다.	10.61
칼이나 흉기로 찌르거나 때린다. (담배 포함).	15.98
기 타	1.13
계	100.00





2)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폭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우리사회가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의 미명 아래의 체벌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동폭력과 체벌의 구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체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보다 아동폭력이 적다는 보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폭력의 실태를 보면 국민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혀 매맞은 경험이 없는 아동이 33.3%, 매맞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66.2%, 그리고 1년 동안 12번 이상 심하게 매를 맞은 아동이 8.2%로 나타나 조사대상 아동의 70%에 가까운 아동이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987, 김광일·고복자) 1993년 전국 17개 시도의 부모 및 아동 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적 학대 조사의 결과에서 보면(1993, 이배근) 97.6% 부모가 자녀를 구타한 경험이 있으며, 조사대상 부모의 75%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부모들은 거의 자녀를 학대



한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구타하는 부모들의 경우 부부폭력이 나타난 경우가 47.2%로 부부폭력과 아동구타가 매우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폭력의 많은 경우, 힘없고 대항하지 못하는 아동이 교육적 효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의 화풀이로 학대를 당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학대당하는 아동이 부모의 매를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3) 노인에 대한 폭력

1995년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권력을 상실하고 경제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종류의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가정폭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치심 때문에 주위사람들에게 잘 알리지 않습니다. 199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7%가 '나는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외에 '혼자 집에 내버려두었다.' '부양할 사람이 꺼려 거처를 여러 번 옮겼다.' 등 조사대상의 약 65%가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와 후유증

1) 아내에 대한 폭력

(1) 신체적 피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아내의 신체적 피해는 뺨 한두 대에서 무차별 구타로 통원치료



까지 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 불구가 되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거나 뼈가 부러져 입원 치료까지 하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1993~94년 구타면접상담 통계를 보면 상당한 여성의 50%가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중 8.34%가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고, 찢리거나 찢어진 상처를 입은 경우가 16.79%, 골절상을 입은 경우가 13.74%, 관절이 탈구된 경우가 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온몸에 화상을 입거나, 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심지어 남편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경우까지 있습니다.(96년 1월 울산의 정순호씨 사건) 피해의 정도가 이와 같이 심한 것을 보면 남편의 아내구타가 "칼로 물베는 부부간의 사랑싸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아내에 대한 폭력은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지속적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이외에 정신적, 심리적 손상을 일으켜 인격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결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체성의 상실과 무기력, 자아개념의 혼란과 같은 자존심의 저하



- *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사회통념으로 인한 죄책감
- * 이웃과 친구로부터 고립, 소외되어 사회생활에 부적응
- * 가출, 자살기도, 자해, 살인 등의 행동장애
- *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 증상 초래
- *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가슴답답증, 두근거림 등의 정신신체장애 등

2) 아동폭력의 피해와 후유증

(1) 신체적 피해

아동에 대한 폭력의 경우 얼굴을 비롯한 신체 각 부위의 타박상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안구와 고막 파열, 화상, 골절, 내장파열 등 구타로 인한 신체적 불구는 물론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동에 대한 폭력은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화상, 전기자극, 찢긴 상처 등 피부의 손상과 복부를 발로 차여 장파열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 두개골 골절, 허리 뼈 골절 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의 후유증으로 아동폭력의 결과는 위의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폭력을 당하는 아동의 10%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며 아동폭력의 피해자의 1/3이 정인지체와 43%에서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며, 70% 이상의 아동이 지능부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은 두통, 복통, 소화장애, 류머티스성 관절염, 말더듬이, 야뇨증 같은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울증, 자살행동, 공포증상, 불면증, 정신집중 장애, 정신병 등과 같은 정신증상을 나타내기





도 합니다. 또한 학습지진, 등교거부, 공격행동, 도둑질, 성적문란 같은 행동장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는 아동이 갖는 심리적 후유증으로는 자아기능 손실, 급성불안 반응, 병적인 대인관계, 원시적 방어기제, 충동조절의 상실, 자아개념의 손상, 자학적, 파괴적 행동, 학교생활 부적응, 중추신경계의 장애 등이 있습니다.

3) 노인에 대한 폭력

(1) 신체적 피해

노인폭력의 경우는 직접적인 구타보다는 밀치기, 위협하기 등으로 나타나나 점차 심각한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폭력의 특수성으로 침대 혹은 의자에 묶어 놓는 등 행동의 제한이나 강요 등도 포함 되기도 합니다.

(2) 정신적 피해

노인폭력의 정신적 피해는 노인을 모욕하거나 위협, 협박당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의 요구를 무시하며 대화를 단절하거나 어린애처럼 다루고 가족원이 가진 문제로 노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가치하게 느끼게 합니다.

3. 가정폭력의 폐해

1) 가정폭력은 가족해체의 주범입니다.

1995년 현재 한해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한 총 4,006건의 이혼 상담사례중 여자의 경우 남편의 부정과 같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을 원한 경우가 44.3%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편의 폭력이 28.1%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심각한 이혼의 사유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설혹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별거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족내의 친밀성과 정서적 상호작용이 단절된 가정은 이미 가정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가정폭력은 비행청소년을 양산합니다.

일반청소년과 소년원생의 가정환경을 비교한 한 연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경우가 일반청소년의 경우 5.7%, 소년원생은 11.4%를 차지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구타하는 경우 일반 청소년이 8.0%, 소년원생의 경우는 13.8%로 일반청소년의 경우보다





소년원생의 경우가 대체로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부부간의 갈등이나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기며, 이로 인해 반사회적 또는 비사회적 문제행동을 갖게 되는 결과를 유발하기 쉬우며 가정내에서 부모에 의해 학습된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사회폭력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 가정폭력은 강력범죄를 부릅니다.

지난 20년간 신문에 발표된 가족관련 범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1970년대는 91건, 1980년대는 123건, 1990년대는 5년 동안만 80건으로 집계되어 가족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살인을 하고 만 사건들로 남희순, 김명희, 전경진, 최현옥 사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4. 가정폭력의 특성

1) 은폐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정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상실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

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외부로 알려져 심각성이 인식되고 외부의 개입이 시작될 때는 이미 그 가족구성원을 치료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폭력 발생의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당하는 폭력은 일생에 몇번을 꼽을 정도이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그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성까지 파괴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 2>와 같이 가정폭력의 주기적 반복성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에 대한 공포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상황에 대한 양가감정과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게 하며 원조자를 포

● 표 2 ▶ 구타 빈도 (최근 1년간)

빈	도	빈도율 (%)
월 1회		1.52
월 1회 이상 ~	12회 미만	33.33
월 1회 이상 ~	4회 미만	33.71
주 1회 이상 ~	6회 미만	23.86
주 7회 이상		1.89
기	타	5.49
계		100.00



함한 모든 타인을 의심하게 되며, 자기를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3) 세대간 지속되는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또다른 심각성은 세대간 전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여성전화의 위 통계에 따르면 아내를 구타하는 남자의 51.21%가 아이들을 구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구타하기 시작한 시기도 1살 이전이 17.20%로 훈육이나 교육의 명목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아이를 구타하는 남자의 성장배경 중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가 50.6%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가정폭력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1)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

“내 마누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나”는 잘못된 인식이 가정폭력을 양산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남자는 돈벌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여자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합니다. 따라서 아내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권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이 아내와 자식을 먹여살린다는 권위와 자부심으로 아내와 자식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는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되어 구타와 학대를 합리화하고 지속시킵니다. 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내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의 경우 무려 67.6%, 여성의 경우는 46%에 달했습니다.





2) 남의 집안 문제에 끼여들면 안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가정문제는 그 집안의 가장이 책임져야 할 개별 가정의 문제로 보며 사회적 관여를 꺼리는 것과 아내나 자녀를 구타하여도 아무런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역시 폭력가정을 양산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인격적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장 가까운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심한 자기 불신과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며 학대당한 아동의 경우는 폭력적인 성격이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3)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가 가정폭력을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문제와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권력인 경찰 등에 의한 일반 시민에 대한 폭력, 학교에서의 체벌이라는 미명하에 발생하는 폭력들이 통치의 이름으로, 교육의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당연스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TV와 영화 등 대중매체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미화하고 영웅시 하기까지 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폭력 문화는 이들에게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르다는 가치관 대신 힘과 권위에 의한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6. 가정폭력의 대한 잘못된 통념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저렇다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





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맞을 짓'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때"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 당하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입니다.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 는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구타 시작 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구타가 훈육과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며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관습은, 남자아이의 폭력 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런 그릇된 행동이 가정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 동방에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7)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코올중독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코올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내폭력의 50% 정도가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





도 합니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맞고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지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10)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내나 아동, 노인들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 보다 훨씬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9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어난 이후에 장애를 갖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90% 이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남편이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됐다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통념이 장애인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11) 장애인은 무능력자다?

장애인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에 가둬놓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으면서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돈도 못 버는 무능력자"라며 장애인을 무시합니다. 장애인의 의무교육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겨우 2년 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인데 당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육율이 8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만든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입니다. 최근에 장애인은 '무능력자(disabled persons)'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differently abled persons)'라는 이념전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7.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가정폭력중 아내구타를 다룰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규정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문제나 개인적, 개별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칼이나 흉기 등을 사용하여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은 커녕 관여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1993년, 1994년 통계를 보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을때 경찰의 태도에 대한 물음에서 77%가 가정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올 4월 달에 발생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상희 할머니 사건은 경찰의 직무유기가 살인사건으로까지 연결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가정폭력을 처리하는 것이 또 다른 사회폭력을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건을 방치하는 경찰의 행위는 직무유기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폭력의 경우 아동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적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18조 제9항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이 법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동법 제 34조 3항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적 제재 조치가 매우 미미하여 실제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8.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내용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명백히 하려고 합니다.

1) 가정폭력에 대한 1차적 조치

가정폭력방지법의 기본 방향 '가정내에서 폭력을 당하는 아내, 아동,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궁극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한다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에 관한 1차적 조치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작업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덜 발생하도록 가족 구조를 강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2) 가정폭력에 대한 2차적 조치

발생한 폭력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현재의 문제를 치유함으로써 문제의 확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개입의 가장 1차적인 조치는 피해자를 폭력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으로 가해자에 대한 격리명령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이든 사법경찰권이 발동되는 경우 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 내지 처분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3) 가정보호처분





① 가정폭력에서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의 일반형사처분 전단계나 혹은 일반형사처분의 내용으로 폭력의 제발 방지와 가정폭력 가해자의 사법적 '분리명령'과 '민사적' 실현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② 가해자에 대한 '가정보호처분 사건의 명령'은 해당 명령상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법률상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위 내용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을 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관련 당사자 및 경찰관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조항을 둡니다. 가정보호처분의 종류로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주거지침입금지 명령, 가해자에 대한 임시퇴거명령, 아동학대의 경우 일시적인 친권상실인 임시친권명령, 임시보호명령,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금전배상명령, 가해자에게 구타자치료 프로그램, 알코올치료 프로그램, 부모훈련프로그램, 부부역할 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자에 대한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긴급전화와, 상담소의 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24시간 신고전화를 받는 상담소는 없습니다. 당장 24시간 상담과 신고가 어려울 경우 경찰서 등과 연결하여 24시간 신고를 받고 그에 따른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밖에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소의 증설과 탁아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아동들의 학업문제와 피해여성에 대한 각종 사회적 정보의 제공과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증거조건의 완화와 상담전문가의 증원채택, 정황증거와 간접증거의 채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걸리고 있는 이혼소송기간 역시 매맞는 아내들이 이혼을 결심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집중심리제도 등의 도입과 이혼준비기간 동안의 경제적 배상명령 등으로 매맞는 여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직업준비 프로그램과 생계비지원, 주택서비스에 대한 지원, 의료보호 등이 필요합니다.

부 록

1

가정폭력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 아내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영국 : 1976년 매맞는 부인들을 위한 특별법 '가정폭력 및 혼인 소송법'을 제정, 전통적인 법률에서 개혁 입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프랑스 : 1991년 '폭력 남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벌금 등이 종전의 일반 형법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합니다.

미 국 : 1973~83년 10년 사이 47개 주와 워싱턴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의 범구조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아동폭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개입, 치료를 위한 법적 대응은 미국,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에서 강제의무 신고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학대를 목격하는 사람에게도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강력한 법적대응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CDB(Confidential Doctor's Bureau)라고 하는 국가위원회에 의한 비밀 신고의사제도가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의 격리, 부모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1991년 한국 정부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은 국제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동 협약 19조 및 32조 등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를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완 또는 입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3) 노인폭력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캐나다

1986년 온타리오의 가족법은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을 때, 부모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상호부조에 대한 법적 의무도 부과하였습니다. 형사상 위반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궁핍, 노령, 쇠약, 질병, 의료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기소의 대상이 됩니다. 재정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로 드러났을 경우는 캐나다의 경우, 최대한도 14년형을 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재산을 되돌려 주거나 보상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미국

1970년대 중반이래 미국의 여러 주에서 노인폭력에 대한 강제보고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인문제가 많고 노인문제에서도 선진국인 미국에서 노인학대는 이미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그 심각성과 대응의 곤란함은 보통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981년 1월 현재 16개주에 성인학대 통보의무화가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1973년에서 80년까지 가결된 것으로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캘로라이나에서 시작되었고 캘리포니아주 성인 학대자 주 통보법은 1983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상담기관 안내

단 체	전화번호	비 고
강화여성익전화	032-934-1900~2	
경남여성회	0551-44-9009	
광주여성익전화	062-363-0485~6	
광주, 전남 한국노인의전화	062-672-0778	
대구여성익전화	053-475-8082~3	
대구여성회	053-421-6758	
대구, 경북 한국노인의전화	053-423-0411	
부산여성익전화	051-817-6464	
부산노인의전화	051-862-0522	
서울여성노동자회	02-867-0516	





단 체	전화번호	비 고
성남여성익전화	0342-730-1118	
수원여성익전화	0331-32-6888	
아동학대예방협회	02-776-5660	
울산여성익전화	0522-211-1205	
인천여성익전화	032-529-254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5364	
전주여성익전화	0652-83-9855	
제주여민회	064-52-9790	
제주 YWCA	064-55-7034	
창원여성익전화	0551-83-8322, 4933	
청주여성익전화	0431-274-1309	
충남여민회(대전)	042-257-979	
충북여성민우회	0431-63-8124	
카톨릭여성익상담소	02-999-4889	
한국노인의전화	02-722-8007	
한국성폭력상담소	02-576-7128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상담소	02-646-8858	
한국여성익전화	02-263-6464~5	

컴퓨터 이용 안내

단 체	전화번호	비 고
● 서울		
자매복지회관(정부기관) '은강희'	02-665-9237,	자녀동반
카톨릭복지회관 '화해의 집'	02-999-4889	
태학기독교사회복지관	02-3411-6470,	자녀동반
한국여성익전화 '쉼터'	02-269-2962	
● 인천		
기화원(인천시청)	032-818-0013,	자녀동반
● 부산		
부산여성익전화 '쉼터'	051-817-4321	
성현원(정부기관)	051-524-9272,	자녀동반
● 대구		
태평상담센터(정부기관)	053-256-7300,	자녀동반
● 마산		
마산카톨릭여성회관 '여성익상담소'	0551-96-9127,	자녀동반





단 체	전화번호	비 고
● 대전		
YWCA	042-255-0004	
구세군 '여성익집'	042-583-8875	
● 광주		
계명여성복지관(정부기관)	062-672-6464	자녀동반
청소년 센터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877-7942	가출청소년
YMCA 청소년센터	747-7417	가출청소년
'나눔의집'	475-2867	초등학교 여자어린이
살레시오 수녀회	605-4580	초등학교 3-5학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평화로운 가정, 폭력 없는 사회를!

● 발행일 ●
 1996년 10월 30일

● 발행처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광운동 1가 38-81
 여성평화의 집 2층
 ▶ TEL. 273-9535

● 본문그림 ●
 이은홍

● 편집디자인 ●
 공간디자인 ▶ TEL. 268-6081-2